

#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2009. 2. 15 제정  
2010. 5. 19 개정  
2010. 9. 7 개정  
2011. 2. 24 개정  
2014. 6. 30 개정  
2015. 1. 29 개정  
2015. 3. 16 개정  
2015. 7. 30 개정  
2015. 9. 23 개정  
2015.12. 30 개정  
2016.11. 15 개정  
2017. 1. 6 개정  
2017.10. 23 개정  
2018. 1. 10 개정  
2019. 1. 3 개정  
2019. 3. 21 개정  
2019. 3. 27 개정  
2019. 6. 11 개정  
2019. 8. 7 개정  
2020. 5. 6 개정  
2021. 6. 17 개정  
2021. 7. 22 개정

##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에서는 ‘대학원’ 이라 한다)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입학·편입학·재입학

### 제 1 절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제2조 (입학절차)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서류 제출
2. 서류심사

3. 논술 및 구술면접심사
4. 합격자 발표
5. 입학 등록

제3조 (입학지원서류) ①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졸업(예정) 대학 학부 성적증명서 1부
5.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원본
6. 영어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7.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② 특별전형(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지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입학전형)

- ① 대학원장은 서류심사, 논술채점, 구술면접심사 등을 위한 입학전형위원을 위촉한다.
- ② 각 전형요소별 입학전형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 ③ 대학원장은 지원자와 친족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입학전형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되며, 입학전형위원과 지원자 간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의 존재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학전형위원을 즉시 교체해야 한다.
- ④ 입학전형위원 위촉 시 입학전형위원에게 지원자와 친족 기타 이해관계가 있음에 대한 인지를 신속히 고지할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4조 (입학지원자격) ①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 일반전형을 거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입학년도 2월 말일 이전 국내·외 4년제 이상 정규대학 학사학위취득(예정)자 및 고등교육법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여성
2. 입학년도 전년(前年) 3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3. 원서접수마감일 이전 2년 이내에 영어공인어학능력시험(TOEFL, TOEIC, TEPS에 한함)을 치르고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4. 기타 대학원이 정하는 지원자격을 갖춘 자

②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 특별전형을 거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입학년도 2월 말일 이전 국내·외 4년제 이상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고등교육법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2. 입학년도 전년 3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3. 원서접수마감일 이전 2년 이내에 영어공인어학능력시험(TOEFL, TOEIC, TEPS에 한함)을 치르고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4. 대학원이 정한 특별전형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기타 대학원이 정하는 지원자격을 갖춘 자
- ③ 복수의 입학전형 유형의 지원자격을 갖춘 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전형요소 반영 방법 및 비율)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전형요소별 반영 방법 및 비율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6조 (선발인원) ①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선발인원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② 선발인원 중 특별전형의 선발인원은 전체선발인원의 7%내지 8%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위원회가 결정한다.

제7조 (최종합격자 결정) ①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성적과 논술 및 구술면접시험 성적을 합한 입학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입학정원 중 1/3 이상을 타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 선발하여야 하고, 입학정원 중 1/3 이상을 비법학사 자격을 갖춘 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일반전형 입학정원의 1/2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하는 인원은 서류심사 성적순으로 우선선발 할 수 있다. 다만, 구술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최종합격자는 특별전형, 일반전형 순으로 선발한다.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에 모두 합격한 자는 특별전형에서 선발한다.

제8조 (입학등록) 최종합격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정해진 납입금을 납부하여 입학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편입학 지원자격)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 편입학 전형을 거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하였거나 수료 예정인 여성
2. 편입학전형 원서접수마감일 이전 2년 이내에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3. 편입학전형 원서접수마감일 이전 2년 이내에 영어공인어학능력시험(TOEFL, TOEIC, TEPS에 한함)을 치르고 공식성적을 취득한 자
4. 기타 대학원이 정하는 지원자격을 갖춘 자

제10조 (편입학 전형요소 반영 방법 및 반영 비율) 편입학 전형의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때에는 퇴학 또는 제적된 날로부터 1회에 한하여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을 한 자에게는 퇴학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제 2 절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제12조 (입학절차) 대학원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의 입학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서류 제출
2. 서류심사
3. 구술면접심사(연구과정에서는 생략될 수 있음)
4. 합격자 발표
5. 입학 등록

제13조 (입학지원서류) ① 대학원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연구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4. 성적증명서 1부
5. 연구계획서 1부
6.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② 대학원장은 연구과정에 입학할 지원자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 (입학지원자격) ①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여성으로 한다.

1.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2. 국내외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3. 기타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변호사 자격을 갖추었거나 석·박사과정 또는 학사과정에서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4.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연구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외 4년제 이상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및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연구 및 실무경력을 가진 자

제15조 (최종합격자 결정) ①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의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성적과 구술면접시험 성적을 합한 입학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② 연구과정의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성적 등으로 산정한 입학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제16조 (준용) 제 32조의2, 제8조, 제11조는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에 준용한다.

### 제 3 장 학사 관리

제17조 (계절학기의 개설) ①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학기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당해 계절학기에 개설할 교과목명, 학점, 개설일자, 등록요령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은 일반 학기의 평점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누계 평점산정에는 포함한다. 다만, 학사경고 및 유급 산정시에는 다음 학기 성적에 포함되어 산정한다.

④ 계절학기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개시 전에 그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② 담당교수는 수강신청 기간 전에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사건을 소재로 진행되는 교과목의 수강인원은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현장실습 교과목은 수강 학기 직전 방학 동안 배정받은 수습기관에서 30시간 이상을 현장실습에 참여한 후 수강신청하여야 하며, 2학년 이상의 수강을 권장한다.

제19조 (수강신청 변경과 철회) ① 수강신청 변경은 소정기간 내에서만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기간 이후에는 교과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자와 폐강과목을 변경할 자는 대학원 행정실에서 수강신청(변경)원서를 교부받아 지도교수 및 교무부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 신청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③ 수강신청을 한 자는 전체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교과목 담당교원의 승인을 얻어 신청교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중간고사를 응시한 이후에는 신청교과목을 철회할 수 없다.

제20조 (성적평가기준 제시) ① 강의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성적평가의 항목, 항목별 배점비율, 항목별 평가기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지필고사를 통해 성적평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시험실시후 1주일 이내에 모범답안 등 시험채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③ 담당교수는 수강학생들과 협의를 거치는 경우 학기 중이라도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성적평가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성적평가방식 다양화) ① 온라인을 통한 수시평가를 활성화하고, 수시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시험실시 후 1주일 이내에 해당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② 팀프로젝트 등을 통한 수행평가를 활성화한다.

제22조 (성적평가의 방식) ①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23조 제2항의 필수과목 중 법률기본필수과목의 성적평가는 다음의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상대평가를 한다. 다만, 수강학생이 9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성적등급별 분포표에 따른다. (개정 2010.5.19., 2019.06.11., 2021.06.17.)

등급별 분포비율	
A : 25%	A+ : 7%, A0 : 8%, A- : 10%
B : 50%	B+ : 15%, B0 : 20%, B- : 15%
C : 21~25%	C+ : 9%, C0 : 7%, C- : 5~9%
D : 0~4%	D : 0~4%

② 선택과목(제24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전공 별로 정해지는 전공기초필수과목은 선택과목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적평가는 다음의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상대평가를 한다. (개정 2019.06.11., 2021.06.17.)

등급별 분포비율		
A	25~35%	+, 0, -의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한다.
B	35~50%	
C	15~40%	
D	0~25%	

③ 외국어강의 교과목과 수강학생의 수가 10명 이하인 선택과목의 성적평가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절대평가를 한다. 다만, 수강학생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A등급이 4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성적평가지 수강철회 인원은 제외하고 실제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⑤ 등급별 분포비율에 해당하는 인원 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상위 등급에서부터 부여하여 계산한다. 등급별 분포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하위등급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⑥ 동일 교과목이 2개 이상 분반으로 개설되는 경우, 담당교수들의 협의로 평균점을 조정한다. (개정 2010.5.19.)

⑦ 상대평가가 적합하지 않은 실무기초과목(법률정보의 조사·법문서의 작성·모의재판·현장실습·법조윤리·리걸클리닉 등)은 S(합격) 또는 U(불합격)의 방식으로 평가한다.

⑧ 법학사 취득자에게 인정되는 법률기본필수과목 학점인정은 S(합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0.5.19.)

⑨ 전문법학석사 과정 이외의 학생의 성적 평가는 절대평가로 한다.

제23조 (성적평가의 관리) ① 지필평가 시험감독은 담당교수가 조교와 함께 수행하며, 행정실은 시험시간 일정표와 감독시 유의사항을 배부하여 모든 시험이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② 재수강은 해당 교과목의 이전 성적이 C+이하(S/U 평가의 경우 U 포함)인 학생에게 허용되며, 재수강 과목(유급으로 인한 재수강의 경우는 제외)의 최고 성적은 B+로 제한한다.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 등급이 이전 성적 등급보다 낮은 경우에도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 등급을 최종 성적으로 한다.

③ 성적평가결과는 성적등급만이 아니라 그 세부내역도 공개한다.

④ 성적평가자료인 시험문제 및 답안지, 과제물 등은 담당교수가 1년간 보존하고, 강의출석부는 행정실에 제출하여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

⑤ 확정된 성적평가에 대하여 해당 학생은 성적이 공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당교수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담당교수는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적 정정을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학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전공) ①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본 대학원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전공 중에서 전공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설계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자기설계전공제안서를 제출한 후,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자기설계전공을 정하여야 한다.

1. 수요영역별 전공

가. 기업법무 전공

나. 공공정책법무 전공

다. 국제법무전공

라. 공익법무 전공

마. 시민생활법무 전공

2. 특성화 전공

가. Gender법 전공

나. 생명의료법 전공

3. 자기설계전공

②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전공을 2개까지 정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전공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각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별표 1에 기재된 해당 전공분야의 전공기초필수과목(4과목, 12학점)과 15학점 이상의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전공기초필수과목을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그 초과학점은 전공선택과목 이수학점으로 본다.

⑦ 자기설계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전공기초필수과목(12학점 이상)과 15학점 이상의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⑧ 각 전공에는 전공주임교수를 둔다.

제25조 (자기설계전공) ①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학생들은 대학원학칙 법학전문대학원시행세칙 제25조에 따라 지도교수의 지도를 거쳐 자신의 전공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

② 자기설계전공을 선택하려는 학생은 전공지도교수를 선정한 후 전공지도교수와의 협의를

거쳐 자기설계전공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학생에 대해 전공지도교수는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학생은 전공지도교수 추천서와 전공이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자기설계전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사운영위원회는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해 전공으로 인정된 자기설계전공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졸업사정을 거쳐 인증받을 수 있다.

제26조 (삭제)

제27조 (학점 취소) 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 (학점 평가) 학생의 학업평가는 매 학기의 중간과 학기말에 시험을 통하여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 (추가시험 및 재시험) ①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담당교수는 사전 또는 사후에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성적은 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되는 성적등급보다 한 등급(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 제2항에 의한 등급을 말한다) 낮은 학점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우

2.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③ 담당교수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 (출결관리) ① 수업에 대한 학생의 출결은 매 수업시간마다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성적표 제출시에 출석부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의 2 (조기종강 금지) 당초 수업시간표에 따른 수업일(주)수를 단축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하거나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시간) 충족 이후 조기종강을 할 수 없다. 다만, 외부인을 초빙교수를 초청하여 계절학기에 개설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수업일(주)수를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 (휴강 제한) ① 휴강사유는 다음 각 호의 1로 제한된다.

1. 강의담당자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강의를 할 수 없는 때

2. 강의담당자의 가족이 사망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당한 때

3. 긴급한 행정업무로 강의를 할 수 없는 때

4. 기타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는 때

②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보강계획 및 보강실시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33조 (학생지도와 지도교수) ① 교수의 학생에 대한 지도프로그램으로 개별면담지도, 전공

별 개인지도, 주제별 집단지도 프로그램을 둔다.

② 전임교원은 40시간 이상 위 학생지도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③ 지도교수의 선정에 있어서는 학생의 의사를 우선 반영하며, 학생의 전공과 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를 고려한다.

④ 학생이 지도교수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지도교수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변경신청기간에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원하는 지도교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의 지원순위를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제34조 (교수 및 학생지원) ① 교무부원장은 교수의 수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총괄 운영하고 지원한다.

② 학생부원장은 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총괄 운영하고 지원하며, 학생들의 학사 관련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학생부원장은 매학기초 장애학생을 면담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34조 2 (현장실습 지원) ① 현장실습 교과목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 전임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현장실습 담당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현장실습의 관리 업무
2. 실습활동 지도 및 평가
3. 기타 관련된 학사업무

③ 현장실습 교과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강의평가) ① 강의평가는 수강생에 의한 강의평가, 교육전문가에 의한 강의평가 및 교수 상호간의 다면 평가 등으로 실시, 운영된다.

② 강의평가의 결과는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이후 강의에 반영, 시행된다.

③ 강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매학기 강의우수교수를 선발하여 포상한다.

④ 대학원장은 강의평가 결과 2학기 연속 3.5 이하를 기록한 교원에 대해서는 강의능력 향상을 위한 해당전공 교수진 회의를 개최하고 강의개선계획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 (교육방법 개선프로그램) ① 교육방법 개선프로그램은 Faculty Development Program 과 신입교수를 위한 교육방법 안내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② Faculty Development Program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 운영된다.

1. 강의우수교수의 수업사례와 피드백 시스템을 통한 강의개선 사례 발표
2. 전체교수의 멀티미디어 강의자료 공개 감평
3. 외국 또는 타 대학의 교육방법에 관한 프로그램 참여
4. 기타 교수의 강의방식과 교육방법의 개선을 위한 자료 구축과 제공

③ 신입교수를 위한 교육방법 안내 프로그램은 신입교수 연수, 수업운영 매뉴얼의 제공, 멀티미디어 강의 시스템의 우선지원, 이화교수학습센터의 강의방식 교육 지원으로 구성, 운영된다.

④ 대학원장은 실무과목 담당교원에게 실무과목의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 하여야 한다.

제37조 (교육자료 지원프로그램) ① 교육자료 지원프로그램은 멀티미디어 개발팀에 의한 사이버강의 콘텐츠 제작 지원, Presentation 강의자료 제작 지원 및 기타 멀티미디어 강의자료의 제작 지원과 미디어강의 시스템 지원으로 구성, 운영된다.

② 미디어강의 시스템 지원은 강의실 시스템 지원, 사이버강의 시스템 지원, 교수 학생간 상시 Communication 시스템 지원으로 구성, 운영된다.

제38조 (조교교육 및 업무지원프로그램) 교무부원장은 연구조교를 통합 관리하고 조교 워크샵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멀티미디어 및 교육 보충자료의 매뉴얼 등 교육자료 활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제 4 장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교류학생

제39조 (수강과목 범위)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교류학생은 당해 학기에 개설된 전임교수의 담당과목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소속대학원과 교류대학원에서 동시에 개설된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제40조 (수강신청) 교류학생이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교류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의 지도교수와 교무부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수강교과목이 결정되면 소속대학원에서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류대학원의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교과목의 수강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류대학원의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수강신청 통지) 교류학생의 수강신청 및 변경·취소는 교류대학원장이 소속 대학원장에게 일괄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성적처리) ① 교류대학원에서 취득한 성적은 점수로 기재하여 소속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류대학원에서 취득하는 학점은 한 학기에 3학점 이내에서 인정하며, 총 인정학점은 15학점 이내로 한다.

제43조 (준수사항) 교류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교류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5 장 외국대학 교환학생

제44조 (교환학생의 범위) 본 장에서 ‘교환학생’ 이라 함은 본교와 외국대학 사이에 체결

된 학술교류협정을 근거로 마련된 ‘교환학생제도(ESP, Exchange Student Program)’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45조 (교환기간) 교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교환학생이 기간연장을 요청할 경우 국제교류처의 심사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2학기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 (등록) 교환학생은 교환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반드시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7조 (교환학생 신고) 교환학생의 학적관리 및 취득한 학점의 인정을 위하여 교류업무 주관부서에서는 행정실에 교환학생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 (학점인정 범위) ① 교환학생이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교환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국 후 즉시 ‘학점인정신청서’에 학점인정 방식, 수강과목 개요 및 번역문을 기재하고 교환대학 성적표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교무부원장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과목명과 학점은 본교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본교의 기준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하고, 본교의 기준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④ 학점인정은 원칙적으로 정규학기 학술교류협정의 교환프로그램에 한하며, 15학점 이내로 한다.

⑤ 기타 특수대학원의 학술교류 프로그램에 교환학생으로 참여한 학생이 취득해온 학점을 전공학점으로의 인정을 요청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은 협정체결대학에 한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기로 한다.

⑥ 교환학점을 인정받아 수료를 하고자 할 경우, 수료심사를 위한 심사회의 일 이전에 성적인정 관련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성적인정을 완료하지 못하면 수료는 다음 학기로 이월된다.

## 제 6 장 학위수여

### 제 1 절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제49조 (수료 인정 및 이수학점) ①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서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하고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9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50조 (학위수여) ①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에서 제49조의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대학원이 정하는 요건(종합시험)을 갖춘 학생에게는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 학생은 5학기 이상 등록한 경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 종합시험은 3과목으로 하고, 사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영구수료대상자의 경우 논술형 시험을 통하여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수여받기에 적절한 법률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학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15)

제51조 (이의신청) 종합시험 시행결과나 이수학점 등 학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요건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대학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학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 2 절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제52조 (외국어시험) ① 법학전문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 시험은 영어시험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 8. 7)

② 영어시험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에 대한 성적으로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사정한다.

③ 영어시험의 방법 및 사정기준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7)

④ 학생은 영어 성적을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논문제출일 전까지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7)

제53조 (종합시험) ①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종합시험은 3과목으로 하고, 구체적 내용은 학사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②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의 학생은 2학기 이상 등록하고, 21학점 이상(논문세미나 1학기 이상 수강 포함)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종합시험에 응시한 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6)

③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 종합시험 시행은 행정실에서 관리하고, 시험이 종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보고한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합격자 명단을 일괄하여 발표한다.

④ 종합시험의 시험방법 및 사정기준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4조 (실시시기) 종합시험은 6월과 12월에 시행한다.

제55조 (응시신청) 법학전문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응시료와 함께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 (자료보관) 행정실은 박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종료 후, 시험 시행 전반 및 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관한다.

제57조 (시험출제) 각 출제위원은 각 시험별로 원칙적으로 학생 1인에 대하여 1과목을 초과하여 출제할 수 없다.

제58조 (연구계획서)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의 학생은 과정이수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및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① 법학전문박사 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로부터 8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21. 7.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법학전문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이하에서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출연한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외 장기근무 및 질병, 임신, 출산 등 연구지연을 초래한 사유로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신청을 하여 학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 7. 22)

2. (삭제) (개정 2021. 7. 22)

3.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대상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2)

4.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6학기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2)

5.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대상자는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2)

제60조 (논문세미나) ①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의 학생은 논문세미나를 2학기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② 논문세미나에 대하여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61조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 ① 법학전문박사 학위논문 심사청구자는 논문심사 전 중간발표에서 지도교수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중간발표는 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의 개강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사정 결과를 발표 후 10일 이내에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간발표를 통해 지도교수의 사정을 거친 학위논문 심사청구자는 논문심사 개시 2주일 전까지 심사용 논문을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의 학생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을 평점평균 2.50 이상으로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개정 2019. 8. 7)

2. 논문세미나를 수강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자

3. 영어와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 2019. 8. 7)

4. 입학년도로부터 8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개정 2019. 8. 7)

제63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 법학전문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은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한다.

제64조 (삭제) (개정 2019. 8. 7)

제65조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건) 법학전문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심사용 논문(가제본) 5부
2. 청구논문심사 신청서

제66조 (심사논문 분량) 심사용 논문의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

제67조 (심사논문 개요 및 번역본 제출) ① 논문개요는 2000자 내·외로 하여 논문 목차 앞에 오게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이 국문으로 된 경우에는 논문개요를 외국어로 작성하고,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국문개요와 국문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 (논문심사위원) ① 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최소 1명 이상, 최대 3명 이내의 외부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위원이 되며, 대학원장에 대한 보고의무를 갖는다.

제69조 (논문심사 판정) ①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회의 합격판정은 박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70조 (논문심사 회수) 논문심사는 최소한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7)

제71조 (재심사) 논문심사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불합격된 논문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72조 (논문심사 결과보고)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소정기일 내에 논문심사(구술시험 포함)를 완료하고, 합격과 불합격으로 최종 판정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 (학위수여) 법학전문박사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심사에 합격한 때에는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

제74조 (완제본논문 용어) ① 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으로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② 학위청구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 번역본과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5조 (완제본논문 온라인 등록) 완제본논문을 제본하여 제출하기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논문 원문과 논문초록을 등록하고, 저작권동의서를 제출한다.

제76조 (완제본논문의 제본 및 제출) ①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면 대학원에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인쇄·제본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대학원장과 지정된 부서에 일정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는 논문에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부칙(2009. 2. 15 제정)

제1조 (시행)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7 개정)

제1조 (시행) 이 내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2. 24 개정)

제1조 (시행)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6. 30 개정)

이 개정 내규는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외국어강의 교과목 성적평가의 경우 제 2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1. 29 개정)

제1조 (시행)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16 개정)

제1조 (시행)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부칙(2015. 7. 30 개정)

제1조 (시행) 이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23 개정)

제1조 (시행) 이 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부칙(2015. 12. 30 개정)

제1조 (시행) 이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1. 15 개정)

제50조 ④ (시행) 이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부칙(2017. 1. 6 개정)

제18조 ④ (시행)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3 개정)

제22조 ②, ③ (시행) 이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부칙(2019. 6. 11 개정)

제22조 ①, ② (시행) 이 내규는 201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6. 17) 개정)

제22조 ①, ② (시행) 이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